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수 신 : 고양시장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19년 4월 12일 ~ 5월 1일(20일간)

■ 검사위원

－ 대표위원 : 김 운 남 (시 의 원)

－ 검사위원 : 김 동 현 (공인회계사)

－ 검사위원 : 최 은 석 (공인회계사)

－ 검사위원 : 임 한 섭 (세 무 사)

－ 검사위원 : 유 병 도 (前 공무원)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고양시장 귀하

2019년 5월 1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고양시 의회로부터 고양시 2018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9년 4월 12일부터 2019년 5월 1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18회계연도 고양시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의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고양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 세출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 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고양시가 작성하여 제출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 김 운 남



검사위원 김 동 현



검사위원 최 은 석



검사위원 임 한 섭



검사위원 유 병 도



목 차

I. 결산검사 경과	1
1. 검사기간	1
2. 결산검사위원	1
3. 결산검사 세부일정	1
4. 결산검사 진행	1
II. 총 평	2
III. 결산검사 총괄현황	4
1. 고양시 재정의 개황	4
2. 세입·세출 결산	7
3. 기금의 결산	17
4. 재무제표의 결산	19
5. 성과보고서	21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22
IV.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24
V.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	41
VI. 수범사례	44

I. 결산검사 경과

1. 검사기간 : 2019. 4. 12. — 5. 1.(20일간)

2. 결산검사위원

직위	성명	담당업무	비고
대 표 위 원	김운남	결산검사 총괄	
위 원	김동현	세입·세출결산,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의 결산검사	
위 원	유병도	세입·세출결산,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의 결산검사	
위 원	임한섭	세입·세출결산,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의 결산검사	
위 원	최은석	세입·세출결산,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의 결산검사	

3. 결산검사 세부일정

구분	일자별	결산검사내용	비고
시의회	2019.4.12.	· 재정상황파악	
본청 등	2019.4.13.~4.28.	· 계산의 과오여부 ·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의 효율성 등 심사 ·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심사 · 기금결산서, 성인지결산서 등 첨부서류 심사	
의견서 작성	2019.4.29.~5. 1.	· 위원 토의 및 의견서 작성	

4. 결산검사 진행

- 결산검사는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필요 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 및 현지 확인조사 실시
- 결산검사 자료는 대표위원을 통하여 자료요구
-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간 토의

II. 총 평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세입세출결산과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실시 하였습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지난 1년 동안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세입예산, 징수, 수납, 세출예산, 예산배정 및 원인행위, 지출 등 예산의 집행내용을 기록하는 예산회계 결산(세입세출결산)과 발생주의 회계 원리에 따라 자산·부채, 수익·비용 등을 기록 보고하는 재무회계 결산(재무제표)으로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결산검사는 단순히 사업을 진행한 결과의 종합이나 쓰고 남은 금액을 확인하는 회계적인 차원이 아니라, 예산과의 괴리 정도, 재정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고양시 재정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236억 원(13.5%) 증가한 2조7,256억 원으로 조정교부금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지방 교부세가 1,25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세입액의 초과세수가 990억 원으로 지방세수 추계의 정확성 제고 및 세입금의 결손처분과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역시 세입의 안정화를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액은 전년대비 2,494억 원(14.4%) 증가한 1조9,876억 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41.2%)와 수송 및 교통 분야(11.6%)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75.7%로 2017회계연도 75.2%보다 증가하였으나, 집행잔액 비율이 14.6%인 바,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각 사업부서에서는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감액하여 가용재원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부서에서는 불용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연도에 과감하게 감액 편성하도록 하는 등 불용액 감소를 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예산의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당해연도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액이 2,545억 원으로 전년대비 283억 원(10%) 감소하였으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된 측면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계획된 사업들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재정을 적극 집행하여 이월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로 예비비 사용 시 각 부서에서는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하여야 할 것이며, 예비비 요구에 앞서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 연도 중 시급하게 지출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추경예산으로의 편성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양성평등기본법」제16조 및 「국가재정법」제16조제5호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사업(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사업(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자료로, 2018회계연도에 94.58%의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대상사업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남녀 골고루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총 183개 지표 중 초과달성 및 미달성 지표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며, 성과 실적치를 적절하게 환류하여 객관적인 비교기준에 근거한 목표치 수정 반영하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은 2018회계연도의 결산검사를 하면서 과거 결산검사보다 심도있게 세입·세출을 비교분석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결산검사는 2018회계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재정운영 및 공유재산관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Y-CITY협약, 피프틴사업, 킨텍스 전시장 운영 등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지고 다루었습니다.

이에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앞으로 예산편성 및 사업 추진 초기 단계에서부터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결산검사 총괄 현황

1. 고양시 재정의 개황

(1) 재정여건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기금의 수입지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일 반 회 계	세 입	1,386,767	1,560,025	1,741,738	1,945,604	2,202,567
	세 출	1,169,220	1,285,187	1,370,473	1,533,680	1,743,165
	결 산 상 잉 여 금	217,547	274,838	371,265	411,924	459,402
특 별 회 계	세 입	357,711	532,780	402,388	456,406	523,046
	세 출	216,230	358,404	201,837	204,467	244,464
	결 산 상 잉 여 금	141,481	174,376	200,551	251,939	278,582
기 금	수 입	69,508	45,817	44,763	76,528	88,566
	지 출	58,511	45,817	44,706	76,513	87,838
	결 산 상 잉 여 금	10,997	-	57	15	728
총 계	세 입 (수 입)	1,813,986	2,138,622	2,188,889	2,478,538	2,814,179
	세 출 (지 출)	1,443,961	1,689,408	1,617,016	1,814,660	2,075,467
	결 산 상 잉 여 금	370,025	449,214	571,873	663,878	738,712

2018 회계연도의 재정규모는 전년대비 세입 13.5%, 세출 14.4% 증가하였고, 세출을 주민 수(2018년 말 기준 1,044,189명)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규모”는 현 연도에 1,987,640원입니다.

고양시의 지난 5년 간 채무의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고
자 치 단 체 채 무 계 (A)	112,951	12,894	47	-	-	
공 채 (B)	-	-	-	-	-	
차 입 금 (C)	111,880	12,260	-	-	-	
채 무 부 담 행 위 (D)	1,071	634	47	-	-	
지 방 공 기 업 채 무 (E)	466	373	279	186	93	
채 무 총 합 계 F (A + E)	113,417	13,267	326	186	93	

고양시 채무는 2016년에 크게 감소한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그 결과 주민 1인당 채무도 2014년 112,260원에서 2018년 89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 재정건전성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운영 규정(훈령)에 의하면 예산대비 채무비율 등 지표를 주의단계나 심각단계에 있는지를 알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 판단 지표

관점	재정지표	산정방식	고양시	주의 기준	심각(위기) 기준
채무관리	① 예산대비 채무비율	$\frac{\text{지방채무 잔액}}{\text{총예산}}$	0.004%	25%초과	40%초과
	② 채무상환비 비율	$\frac{\text{지방채무 상환액}}{\text{일반재원}}$	0.01%	12%초과	17%초과
세입관리	③ 지방세 징수액 현황	$\frac{\text{당해연도 월별 누적 징수액}}{\text{최근 3년 평균 월별징수액}}$	106.7%	50%미만	0%미만
자금관리	④ 금고잔액 현황	$\frac{\text{당해연도 분기말 잔고}}{\text{최근 3년 평균 분기말 잔고}}$	112.2%	20%미만	10%미만
공 기 업	⑤ 상수도 공기업 부채비율	$\frac{\text{부 채}}{\text{순 자 산}}$	0.67%	400%초과	600%초과
	⑤ 하수도 공기업 부채비율		0.31%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5개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재정자립도와 재정 자주도는 다음과 같습니다.(2018년 최종예산 기준)

$$\text{재정자립도} = 45.68\% \left[\frac{(\text{지방세} + \text{세외수입})}{\text{자치단체 예산규모}} \times 100 \right]$$

* 지방세 : 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 과년도 수입

세외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 + 과년도 수입

$$\text{재정자주도} = 69.38\% \left[\frac{(\text{자체수입} + \text{자주재원})}{\text{자치단체 예산규모}} \times 100 \right]$$

* 자체수입 : 지방세 + 세외수입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재정보조금

2. 세입·세출 결산

(1) 총괄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백만 원)

회계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결산상 잉여금 (C = A-B)
합 계	2,626,578	2,725,613	1,987,629	737,984
일 반 회 계	2,102,941	2,202,567	1,743,165	459,402
특 별 회 계	523,637	523,046	244,464	278,582
공 기 업 특 별 회 계	303,787	291,219	141,027	150,192
기 타 특 별 회 계	219,850	231,827	103,437	128,390

회계별	현년도 채무상환	이월액(D)			보조금집행잔액 (E)	순세계잉여금 (F=C-D-E)
		명시	사고	계속비		
합 계	-	50,439	14,422	189,655	12,968	470,500
일 반 회 계	-	44,602	12,342	145,756	11,873	244,829
특 별 회 계	-	5,837	2,080	43,899	1,095	225,671
공 기 업 특 별 회 계	-	2,400	415	22,291	881	124,205
기 타 특 별 회 계	-	3,437	1,665	21,608	214	101,466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2,725,613백만 원으로 예산현액 2,626,578백만 원보다 99,035백만 원 더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세입 결산액의 72.92%인 1,987,629백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737,984백만 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비 50,439백만 원, 사고이월비 14,422백만 원 및 계속비 189,655백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2,968백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70,500백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 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470,500백만 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2) 일반회계

가. 세입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백만 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결 산 액	2,102,941	2,363,009	2,202,567	20,838	139,604
결 산 확 인 액	2,102,941	2,363,009	2,202,567	20,838	139,604
차 액	-	-	-	-	-

○ 세입결산 개요

- 수납액 2,202,567백만 원은 예산현액의 104.7%로서 99,626백만 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 초과 수납액은 지방세 57,885백만 원, 세외수입 27,561백만 원, 조정교부금 10,577백만 원, 지방교부세 3,917백만 원 순입니다.
- 지방세의 경우 지방소득세 27,472백만 원, 자동차세 21,830백만 원, 재산세 12,759백만 원 등의 초과 수납됐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그 외수입 21,811백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2,563백만 원, 이자수입 2,435백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2,158백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본 년도 세입의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결산확인액과 결산액은 일치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백만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2,202,567	2,202,567	-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단위: 백만원,%)

연도별	예산현액	징 결 정 수 액	수 납 액	불 결 손 액	예 산 대 비 징수결정액	징 수 결 정 대비 수납액	징수결정대비 불 납 결 손 액
2018	2,102,941	2,363,009	2,202,567	20,838	112.37	93.21	0.88
2017	1,839,530	2,103,651	1,945,604	19,371	114.36	92.49	0.92
증 감	263,411	259,358	256,963	1,467	△1.99	0.72	△0.04

예산대비 징수결정액이 증가된 주된 이유는 전년도이월사업비이며, 수납액은 전년도 1,945,604백만 원 보다 256,963백만 원이 많은 2,202,567백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19,371백만 원 보다 1,467백만 원이 증가한 20,838백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의 주된 사유는 무재산 14,991백만 원, 시효소멸 3,477백만 원, 집행수입이 압류액 초과 1,939백만 원 등입니다.

세목별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불 납 결 손	미 수 납액
합 계		2,102,941	2,363,009	2,202,567	20,838	139,604
지 방 세	소 계	561,500	694,535	619,385	14,081	61,069
	주 민 세	17,000	19,615	18,610	-	1,005
	재 산 세	206,000	224,668	218,759	-	5,909
	자 동 차 세	111,000	143,589	132,830	1	10,758
	지 방 소 득 세	150,000	190,832	177,472	418	12,943
	담 배 소 비 세	58,000	57,053	57,053	-	-
	지 난 년 도 수 입	19,500	58,778	14,661	13,662	30,454
세 외 수 입	소 계	118,111	230,964	145,672	6,757	78,535
	재 산 임 대 수 입	1,164	1,327	1,183	-	144
	사 용 료 수 입	23,784	24,516	23,691	-	825
	수 수 료 수 입	30,951	31,235	30,774	-	461
	사 업 수 입	5,995	6,183	6,178	-	5
	징 수 교 부 금	16,486	19,049	19,049	-	-
	이 자 수 입	2,021	4,456	4,456	-	-
	재 산 매 각	2,000	617	586	-	31
	부 담 금	11,952	20,292	12,601	-	7,691
	용 자 금	-	-	-	-	-
	과 징금 및 과태료	3,431	12,460	5,589	-	6,871
	그 외 수 입	12,027	35,261	33,838	-	1,423
	지 난 년 도 수 입	8,300	75,568	7,727	6,757	61,084
지 방 교 부 세		261,451	265,368	265,368	-	-
조 정 교 부 금 등		179,720	190,297	190,297	-	-
보 조 금		569,929	569,876	569,876	-	-
보 존 수 입 등		412,230	411,969	411,969	-	-

세입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28.1%인 619,385백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145,672백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04%인 265,368백만 원, 조정 교부금 등은 190,297백만 원, 보조금 등은 569,876백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나. 세출

일반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결 산 액	1,861,535	2,102,941	1,743,165	202,700	157,076
결 산 확 인 액	1,861,535	2,102,941	1,743,165	202,700	157,076
차 액	-	-	-	-	-

○ 세출결산 개요

- 예산액은 1,861,535백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41,406백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102,941백만 원입니다.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2.9%에 해당하는 1,743,165백만 원이었으며
- 이월액은 202,700백만 원으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117건 44,602백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58건 12,342백만 원이었으며, 계속비이월액은 124건 145,756백만 원으로 그 주요내용은 관련기관 업무 협의 지연과 동절기 사업진행의 위험, 사업기간 미도래 등에 기인합니다.
- 예산전용은 31건 656백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행신종합사회복지관 평생학습센터 운영비 80백만 원, 가와지벌씨 박물관 소방공사 26백만 원 등입니다.
- 예산이체는 4건 80백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라 시민안전과에서 도시계획과로 기본경비 세출예산 60백만 원을 이체하였고, 시민안전센터 문화재 영상감시시스템 업무 통합으로 20백만 원을 문화예술과에서 시민안전과로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 예비비 지출액은 52건 9,936백만 원으로 주요 지출내역은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비용 218백만 원, 소송 패소비용 지급 5,481백만 원, 호우에 따른 재난지원금 980백만 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백만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1,743,165	1,743,165	-

세출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7지출액	2018회계연도			전년대비증감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금액	비율
합 계	1,533,679	2,102,941	1,743,165	82.89	209,486	13.66
일 반 공 공 행 정	134,483	164,806	137,584	83.48	3,101	2.31
공공질서 및 안전	38,661	37,830	29,317	77.50	△9,344	△24.17
교 육	45,563	69,443	67,561	97.29	21,998	48.28
문 화 및 관 광	60,678	103,106	68,022	65.97	7,344	12.10
환 경 보 호	99,526	117,717	106,405	90.39	6,879	6.91
사 회 복 지	633,025	745,058	718,830	96.48	85,805	13.55
보 건	36,308	42,058	38,807	92.27	2,499	6.88
농 립 해 양 수 산	27,879	32,456	28,039	86.39	160	0.57
산 업 중 소 기 업	42,640	32,064	25,922	80.84	△16,718	△39.21
수 송 및 교 통	155,434	314,902	201,934	64.13	46,500	29.92
국 토 및 지 역 개 발	54,912	131,385	94,970	72.28	40,058	72.95
예 비 비	-	67,637	-	-	-	-
기 타	204,570	244,479	225,774	92.35	21,204	10.37

본 회계연도의 기능별 지출액은 사회복지 718,830백만 원, 기타 225,774백만 원, 수송 및 교통 201,934백만 원 등의 순이며 전년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은 사회복지 85,805백만 원이고 가장 증가 폭이 큰 부문은 국토 및 지역개발로 전년대비 72.95%가 증가하였습니다.

(3) 특별회계(직영 공기업포함)

가. 세입

특별회계 세입결산 확인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523,637	550,606	523,046	651	26,909
공	기	303,787	293,903	291,219	-	2,684
	업					
	특					
	별					
	회					
	계					
상	수	161,406	157,180	156,289	-	891
하	수	142,381	136,723	134,930	-	1,793
기	타	219,850	256,703	231,827	651	24,225
	특					
	별					
	회					
	계					
주	택	-	-	-	-	-
의	료	6,777	7,565	6,882	-	683
저	소	664	2,285	779	-	1,506
도	시	79,291	108,577	86,080	651	21,846
구	획	12,855	3,284	3,329	-	△45
생	활	14,848	28,033	28,033	-	-
장	기	103	105	105	-	-
한	국	76,164	77,436	77,219	-	217
발	전	137	137	137	-	-
기	반	260	263	247	-	16
도	시	853	858	858	-	-
공	유	16,812	17,055	17,053	-	2
도	시	11,086	11,105	11,105	-	-
결	산	523,637	550,606	523,046	651	26,909
차	액	-	-	-	-	-

○ 세입결산 개요

- 수납액 523,046백만 원은 예산현액의 99.9%로서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96.7%보다 3.2% 증가하였습니다.
- 불납결손액 651백만 원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발생하였으며 시효완성에 기인합니다.
-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4.9%인 26,909백만 원으로 이는 주로 납기미도래, 정리 유예에 기인한 것입니다.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각 회계의 결산확인액과 일치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백만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523,046	523,046	-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습니다.

나. 세출

특별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482,209	523,637	244,464	51,816	227,357
공 기 업 특 별 회 계		281,753	303,787	141,027	25,106	137,654
	상 수 도	160,644	161,406	75,487	6,069	79,850
	하 수 도	121,109	142,381	65,540	19,037	57,804
기 타 특 별 회 계		200,456	219,850	103,437	26,710	89,703
	주 택 사 업	-	-	-	-	-
	의 료 급 여 기 금	6,776	6,776	6,756	-	20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664	664	132	-	532
	도 시 교 통 사 업	76,732	79,291	72,980	4,074	2,237
	구 획 정 리 사 업	11,053	12,855	1,069	1,092	10,694
	생 활 폐 기 물 처 리 시 설	8,946	14,848	-	5,902	8,946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104	104	2	-	102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67,033	76,164	17,892	9,030	49,24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37	137	132	-	5
	기 반 시 설	260	260	-	-	260
	도 시 재 정 비 축 진	853	853	-	-	853
	공 유 임 야	16,812	16,812	-	-	16,812
	도 시 재 생	11,086	11,086	4,474	6,612	-
결 산 확 인 액		482,209	523,637	244,464	51,816	227,357
차	액	-	-	-	-	-

○ 세출결산 개요

- 예산액은 482,209백만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41,428백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523,637백만 원이었고, 세출예산 전용액은 1건 8백만 원입니다.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46.7%에 해당하는 244,464백만 원이고
- 예비비는 공공기반시설 설치공사사업 1건 45백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44건 5,837백만 원, 사고이월은 7건 2,080백만 원, 계속비이월은 41건 43,899백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백만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244,464	244,464	-

세출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습니다.

(4)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본 년도의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시이월 ·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56	48,039	61	14,007	144	167,364	
일 반 회 계	117	44,602	58	12,342	124	145,756	
기타특별회계	39	3,437	3	1,665	20	21,608	

○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액 202,700백만 원은 계속비 145,756백만 원, 명시이월 44,602백만 원, 사고이월 12,342백만 원입니다.

- 명시이월 주요사업의 이월사유는

-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공사(일산서구 안전건설과)는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기간 6개월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월동기 부설 예방을 위한 공사 중지 사유로 7,063백만 원 이월함.
- 강매IC일원 교통혼잡 개선사업(도로정책과)은 2018년 제1회 추경으로 우선 시행된 강매IC 일원 혼잡개선 타당성조사 용역완료 후, 착수하게 되어 공사 소요기간 및 교통안전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사유로 1,920백만 원 이월함.
-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사업(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은 제조사별 차량성능 사전 검토기간 및 장비 제작기간(6개월)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9년 2월 집행완료 예정으로 1,720백만 원 이월함.

- 사고이월 주요사업의 이월사유는

- 자유로(자유로JC~신평동) 방음벽 설치공사(덕양구 안전건설과)는 2017년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교통소음영향평가, 주민간담회, 지하매설물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 및 동절기 부실공사예방을 위한 공사 중지 사유로 2,981백만 원 이월함

- 아쿠아 스튜디오 운영지원사업(첨단산업과)은 사업추진기간이 2018년 12월 착수하여 2019년 6월 완공예정 사유로 인하여 1,687백만 원 이월함.

- 백마교 내진성능 보강공사(일산동구 안전건설과)는 사업추진기간이 2018년 8월 착수하여 2019년 1월 완공예정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608백만 원 이월함.

- 계속비이월 주요사업의 이월사유는

- 일산서구 청사 건립공사(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는 2008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사업추진기간으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 14,812백만 원 이월함.

- 고양 신한류 문화·관광벨트 구축사업(신한류관광과)은 사업기간이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로 연구용역비 등 12개 세부사업비 7,030백만 원 이월함.

- 화정동~원흥동 간 도로개설공사(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는 보상절차 이행 및 사업기간이 2005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 9,628백만 원 이월함.

○ 기타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액 26,710백만 원은 계속비 21,608백만 원, 명시이월 3,437백만 원, 사고이월 1,665백만 원입니다.

- 명시이월 주요사업의 이월사유는

- 고양향교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교통정책과)은 편입대상 토지의 보상협의 등 제반 손실보상 절차이행 기간소요로 1,619백만 원 이월함.

- 별말마을회관, 화전복지회관 개선공사(도시재생과)는 2018년 9월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350백만 원 이월함.

- 사고이월 주요사업의 이월사유는

- 교통안전문화 정착사업 및 버스전용차로 개선공사(교통정책과)는 월동기 부실예방을 위한 공사중지 및 야간공사로 인한 공기연장으로 각 949백만원과 610백만 원 이월함.

- 계속비이월 주요사업의 이월사유는

- 공공기반시설 설치공사(도시정비과)는 환지사업 공공기반시설 설치공사 미완료로 1,085백만 원 이월함.

- 환경에너지시설 신기술 대체건설사업(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은 한국환경공단 위탁수수료 등에 대한 소송이 종결이 되었으나 한국환경공단의 사업비 정산이 2019년 상반기 완료예정에 따라 5,902백만 원 이월함.

3. 기금의 결산

본 년도 기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금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증가 또는 감소액	조성액	사용액	
계	106,061	9,078	18,306	9,228	115,139
통 합 관 리 기 금	37,184	2,847	4,231	1,384	40,031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142	4,043	4,073	30	7,185
옥 외 광 고 발 전 기 금	1,131	356	914	558	1,487
폐 기 물 처 리 시 설 주 민 지 원 기 금	150	△140	346	486	10
체 육 진 흥 기 금	4,051	87	106	19	4,138
장 학 기금	1,145	30	30	-	1,175
고양시남북교류협력기금	3,049	1,962	2,062	100	5,011
노 인 복 지 기 금	3,510	9	93	84	3,519
식 품 진 흥 기 금	1,413	32	442	410	1,445
자 활 기 금	3,431	4	118	114	3,435
성 평 등 기 금	3,478	15	92	77	3,493
아 동 복 지 기 금	1,868	199	247	48	2,067
중소기업육성기금	8,281	△448	236	684	7,833
농 업 인 육 성 기 금	4,528	30	119	89	4,558
재 난 관 리 기 금	29,700	52	5197	5145	29,752

2018회계연도 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현재의 조성액 106,061백만 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18,306백만 원을 더하고 사용액 9,228백만 원을 공제한 115,139백만 원입니다.

최근 5년간의 기금 조성·사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5년 평균 증가율
전년도말 조성액	105,327	93,089	88,946	94,488	106,061	0.2%
당해연도 조성액	8,453	8,908	10,780	17,153	18,306	21.3%
당해연도 사용액	20,691	13,051	5,238	5,580	9,228	△18.3%
당 해 연 도 말 조 성 액	93,089	88,946	94,488	106,061	115,139	5.5%

고양시 기금은 최근 5년간 평균 39%p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기금조성에 비해 기금사용의 증가율이 약 5.5%p 낮기 때문입니다

〈 기금운용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전년도 이월 (사고 등)	수입	지출	다음연도 이월액 (사고 등)
계	15	88,551	87,838	728
통 합 관 리 기 금	-	41,415	41,415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5	4,580	4,590	5
옥외광고발전기금	-	1,410	1,410	-
폐 기 물 처 리 시 설 주 민 지 원 기 금	-	496	496	-
체 육 진 흥 기 금	-	206	206	-
장 학 기금	-	30	30	-
고양시남북교류협력기금	-	3,050	3,030	20
노 인 복 지 기 금	-	93	93	-
식 품 진 흥 기 금	-	1,054	1,054	-
자 활 기 금	-	158	158	-
성 평 등 기 금	-	92	92	-
아 동 복 지 기 금	-	267	267	-
중소기업육성기금	-	685	685	-
농업인육성기금	-	119	119	-
재 난 관 리 기 금	-	34,896	34,193	703

4. 재무제표의 결산

2018회계연도 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2017	전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자 산	18,450,429	18,031,912	418,517	2.3
I. 유 동 자 산	981,753	887,808	93,945	10.6
II. 투 자 자 산	306,481	306,641	△160	△0.1
III. 일 반 유 형 자 산	1,781,815	1,706,533	75,282	4.4
IV. 주 민 편 의 시 설	4,720,939	4,695,624	25,315	0.5
V. 사 회 기 반 시 설	10,603,858	10,403,658	200,200	1.9
VI 기 타 비 유 동 자 산	55,583	31,648	23,935	75.6
부 채	113,325	84,516	28,809	34.1
I. 유 동 부 채	42,837	39,405	3,432	8.7
II. 장 기 차 입 부 채	-	93	△93	△100
III. 기 타 비 유 동 부 채	70,488	45,018	25,470	56.6
순 자 산	18,337,104	17,947,396	389,708	2.17
I. 고 정 순 자 산	17,107,260	16,807,948	299,312	1.78
II. 특 정 순 자 산	75,765	69,995	5,770	8.24
III. 일 반 순 자 산	1,154,079	1,069,453	84,626	7.91

2018회계연도 말 고양시의 자산은 18,450,429백만 원으로 전년도의 18,031,912백만 원보다 418,517백만 원(2.3%) 증가하였는데, 이는 유동자산이 93,945백만 원(10.6%), 일반유형자산이 75,282백만 원(4.4%), 주민편의시설이 25,315백만 원(0.5%), 사회기반시설 200,200백만 원(1.9%), 기타비유동자산이 23,935백만 원(75.6%)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2018회계연도 말 고양시의 부채는 113,325백만 원으로 전년도의 84,516백만 원보다 28,809백만 원(34.1%)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채무 상황 등으로 인해 장기차입부채는 전액 감소하였으나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등 유동부채, 소송부채 등 비유동부채가 각각 3,432백만 원(8.7%), 25,470백만 원(56.6%)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재정운영 및 중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8	2017	전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사업순원가 (가 - 나)	771,823	601,916	169,907	28.23
가. 사업총원가	1,486,227	1,272,511	213,716	16.79
나. 사업수익	714,404	670,595	43,809	6.53
II. 관리운영비	247,704	230,651	17,053	7.39
III. 비배분비용	75,298	70,429	4,869	6.91
IV. 비배분수익	92,550	82,824	9,726	11.74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1,002,275	820,172	182,103	22.20
VI. 일반수익	1,195,649	1,000,470	195,179	19.51
VII. 재정운영결과 (V - VI)	△193,374	△180,298	△13,076	7.25

고양시의 본 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순원가는 사업총원가 1,486,277백만 원에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714,404백만 원을 차감한 771,823백만 원이며, 총 228개의 정책사업 중 순원가가 많은 상위 정책사업은 ‘폐기물관리’(74,479백만 원)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52,428백만 원)입니다.

또한, 2018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232,255백만 원과 기타관리운영비 15,449백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이자비용 294백만 원, 자산처분손실 및 감가상각비 등 75,004백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배분수익은 경상세외수익 9,683백만 원, 임시 세외수익 36,997백만 원, 기타수익 45,870백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고양시의 재정운영결과는 △193,374백만 원으로 전년도의 △180,298백만 원보다 13,076백만 원(7.25%) 감소하였는데, 이는 관리운영비와 비배분수익이 각각 17,053백만 원, 9,726백만 원 증가하고, 사업 순원가와 비배분비용이 각각 169,907백만 원, 4,869백만 원 증가하는 등 재정운영 순원가가 182,103백만 원(22.20%)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5. 성과보고서

고양시에서는 「지방재정법」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제15조 및 제16조의 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18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대상기관 :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포함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본예산 기준)
- 대상사업 : 「2018년도 성과계획서」상의 모든 ‘정책사업’

고양시는 본 회계연도의 ‘평화의 시작 미래의 중심, 고양’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17개)-정책사업목표(101개)-단위사업(283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개,%P)

구분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 (A)	초과달성 (B)	달성 (C)	미달성	달성률 ((B+C)/A)
계	17	101	183	17	121	45	75
정책기획담당관	1	1	5	-	5	-	100
시민소통담당관	1	1	4	-	3	1	75
감 사 담 당 관	1	1	1	1	-	-	100
인적자원담당관	1	1	3	-	-	3	0
공 보 담 당 관	1	1	4	-	4	-	100
자 치 행 정 실	1	10	16	2	12	2	88
민 생 경 제 국	1	5	13	3	7	3	77
시 민 복 지 국	1	7	13	2	8	3	77
여 성 가 족 국	1	6	7	3	3	1	86
교 육 문 화 국	1	7	11	-	7	4	64
미 래 전 략 국	1	11	22	2	12	8	64
도 시 정 책 실	1	4	7	-	6	1	86
시민안전주택국	1	6	8	-	6	2	75
교 통 건 설 국	1	7	9	-	8	1	89
직 속 기 관	1	9	16	2	10	4	75
사 업 소	1	23	39	2	25	12	69
의 회 사 무 국	1	1	5	-	5	-	100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1) 채권

채권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30,018	3,239	3,939	29,318
일반회계	27,650	2,922	3,513	27,059
특별회계	2,368	317	426	2,259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2,368	317	426	2,259

검사결과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9,318백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채무

채무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발생액	상환소멸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186	-	-	-	-
일반회계	-	-	-	-	-
차입금	-	-	-	-	-
채무부담행위	-	-	-	-	-
특별회계	186	-	-	-	-
공기업	186	-	93	-	93
기타	-	-	-	-	-

검사결과 채무는 전년대비 93백만 원이 감소한 93백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채무의 상환 예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상환 예정액

(단위: 백만원)

구분	채무액	2019	2020	2021	2022	2023 이후	비고
합 계	93	93	-	-	-	-	
차입금	93	93	-	-	-	-	

(3) 공유재산

본 년도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	계	17,266,426	371,961	28,223	17,610,164
행정 재산	소 계	16,854,687	371,955	28,177	17,198,465
	공 용 재 산	957,105	42,933	-	1,000,038
	공 공 용 재 산	15,275,287	329,022	28,177	15,576,132
	기 업 용 재 산	608,330	-	-	608,330
	보 존 용 재 산	13,965	-	-	13,965
일	반 재 산	411,739	6	46	411,699

검사결과,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343,738백만 원이 증가한 17,610,164백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시도39호선 우회도로(토당~월당, 월당~관산)공사 토지매입 및 일산서구 청소년수련관 건물 신축 등이며 감소내용은 보존부적합 토지매각, 인근 토지 합병말소, 전세권설정 만료에 따른 해지 등 입니다.

(4) 물품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 증감 현황

(단위: 개,백만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취득	처분	
수	량	2,788	390	101	3,077
금	액	31,297	3,656	251	34,702

검사결과, 물품은 전년도 보다 3,405백만 원이 증가한 34,702백만 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미니버스, 전기자동차 및 냉난방기 등의 신규 취득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IV.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1)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현액(A)	징수결정액	세입결산액(B)	초과세입(C=A-B)	비고
2018	2,626,578	2,913,615	2,725,613	99,035	
2017	2,311,752	2,588,993	2,402,010	90,258	
2016	2,049,159	2,332,927	2,144,126	94,967	

[문제점]

- 세입예산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한 회계연도에 발생할 금전적 수입금 전액을 면밀히 추계하고, 이를 당초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 세출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함
- 최근 3년 간 세입결산내역을 보면 지방세 세입 추계에 있어 예산대비 결산 차액이 크게 나타나는 바,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이 떨어져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미흡함

[개선 및 권고사항]

- 세입예산추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수립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지방세 세입수입 추계가 어려운 점은 있으나, 세입 추계 방법 개선 등을 통하여 세입예산의 적정한 계상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대응이 요구됨

(2) 세입금 환급사유 관리 철저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환급액	사유별			비고
		행정기관착오	국세경정 외	기타	
합계	19,058	1,467	8,370	9,221	
일반회계	18,753	1,207	8,362	9,184	
특별회계	305	259	9	37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305	259	9	37	

[문제점]

- 결산서 상 세입금 환급현황을 살펴보면, 환급액 19,058백만 원 중 행정기관착오 환급액이 1,467백만 원으로 7.69%, 기타 환급액이 9,221백만 원으로 48.38%를 차지하고 있음

-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행정기관착오 259백만 원은 세입 중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전산에 입력하면서 과소입력 함에 따라 이를 정정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이는 환급 사유 입력오류 사항임

[개선 및 권고사항]

- 환급은 결산서에 기록되는 만큼 사업담당자들은 세입금의 내부거래 시 업무에 신중을 기하여 할 것으로 판단됨

(3) 세입금 반환 및 예비비 승인 철저

[현황]

(단위: 천원)

구분	미수납액	사유별		
		무재산	행방불명 외	기타
합계	163,829,906	21,052,337	127,556,897	15,220,672
일반회계	139,604,516	19,329,322	105,009,730	15,265,464
특별회계	24,225,389	1,723,015	22,547,165	-44,791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45,443	-	-	-45,443

[문제점]

- 결산서 상 구획정리특별회계의 세외수입 중 지난연도 수입의 미수납액이 △45,443천원으로 기록되어 있음
- 업무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전년도 과오납된 금액을 환급처리 함에 있어 과오납 반환 명령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예비비를 승인받아 환급하였음

[개선 및 권고사항]

- 결산서는 외부에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자료로 미수납액을 음수로 기재해 공개하는 것은 결산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의존재원(보조금) 세입예산 편성 철저

[현황]

- 회계연도 내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은 보조주체로부터 보조금 확정 또는 내시 통보를 받아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고 세입예산의 경우 보조금 수령 시 징수 결정을 하고 있음
- 이후 보조주체의 예산사정과 사업계획의 변동 여부에 따라 보조금이 확대·축소 등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의 기회를 통하여 조정 반영하여야 함

[문제점]

- 2018회계연도 세입보조금의 경우 회계연도 내에 수납되거나 감액 결정 통지가 되었음에도 내시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여 보조금 내시액과 예산액의 불일치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불용액이 발생함

[개선 및 권고사항]

- 보조사업의 보조금 관리는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바탕으로 보조금의 수령, 증감 등 변동사항에 따라 즉시 예산에 반영토록하고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국도비 사업의 경우 보조금 세입과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착오 세입조치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변경된 내시의 정확한 예산 반영이 되어야 할 것임

(5) 미집행 행사비 잔액 반납 소홀 및 전출금 미집행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지출잔액	불용률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민속놀이 한마당 축제	36,000	-	36,000	100%
전국장애인 동계체육대회지원, 고양 마스터즈 수영대회, 고양시장배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	30,000	-	30,000	100%
신년 해맞이 행사,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59,600	8,600	51,000	86%
내부거래지출(기반시설 특별회계)	260,000	-	260,000	100%

[문제점]

-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에 의거 예산편성 시 합리적인 추계에 의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도모해야 함에도
 -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 민속놀이 한마당 축제 (문화예술과)가 ‘조류독감 전파 방지’를 위해 취소되었고, 전국 장애인 동계 체육대회지원, 고양 마스터즈 수영대회, 고양시장배 전국 스포츠 클라이밍대회 (체육진흥과)가 2018 평창 패럴림픽 대체 및 협회 내부 사정으로 취소되었으며, 신년 해맞이행사 및 사무관리비 (행주산성관리사업소)가 ‘조류독감 전파 방지’를 위해 취소됨에 따라 미집행 되었음에도 추경예산편성 시 삭감하지 않고 불용처리 하였으며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고양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조례」(도시정비과)가 폐지됨에 따라 특별회계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액 전출하여야 함에도 내부거래 지출 미집행으로 불용처리 되었음

[개선 및 권고사항]

- 일정과 기간이 한시적으로 명시된 각종행사와 사업 추진의 변경 및 취소 등 미집행 사유 발생 및 전출금의 경우, 차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드시 감액 및 전출처리 하여야 할 것임
- 특히, 상반기 이전에 시행된 여타 1회성 및 단발성 행사비 집행 잔액(1천만 원 이상)에 대하여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감액처리 하여 시급한 다른 사업에 세출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집행 및 운용이 제고 될 수 있도록 권고함

(6) 반복적 · 관행적 불용처리 개선

[현황]

연번	사업명	담당부서
1	고양시와 서울시간 상생협약 지원금 처리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2	행주대첩비(중건비) 훼손에 따른 보호방안	문화예술과

[문제점]

- 상생협약 지원금은 한강 끈 벌레 발생으로 (서울시 난지재생물센터 재생물 방류로 인한 수질오염 추정) 행주어촌계 어업피해사안이 대두됨에 따라 2015년 고양시와 서울시 간의 상생협약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매년 2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서울시 지원금을 행주어촌계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예산에 반영한 후 어민들의 수용 반대로 미집행 된 채 100% 불용처리 사례가 3년간 반복하여 발생되고 있음
- 행정대첩비(중건비)훼손에 따른 보호는 1억1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호비각 설치사업을 추진코자 설계(1천3백만 원 지출)를 완료 하였으나 행주서원 가치상실 의견 등으로 보호비각설치사업을 잠정유보 함에 따라 설치비 9천7백만 원을 불용하였음

[개선 및 권고사항]

- 상생협약 지원금은 2019년 4월 현재, 끈 벌레와 실뱀장어 관련 연구용역(인하대)이 완료되었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향후 고양시와 서울시 간의 협의를 통한 보상타결 등 행주어민피해대책 해결 시 까지는 상생협약 지원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현재 누적된 8,000만 원을 행주어촌계 및 서울시와 협의 시 고양시의 대응력 강화 차원 및 예산집행 운용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행주어촌계와 협의하여 기자재지원 뿐만 아니라 필요한 지원방안 (소형 포구설치 등)을 발굴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하거나 어민들의 수용반대가 계속될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금 적립방안(기금 설립 등)이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행주대첩비(중건비)의 경우 훼손방지대책을 더는 미룰 수 없는 경우, 필요에 따라서는 문화재 및 사적지 보호를 위한 해당 전문기관 및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거쳐 타 보호 방법(행주대첩비를 기념관으로 이전하여 보존하고 그 자리에 유지 표석, 또는 모조품을 설치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는 것을 권고함

(7) 전년도 명시이월의 불용처리 주의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현액	명시이월액	지출액	지출잔액	불용률
고양 어울림누리 빙상장 리모델링 공사	3,422,200	3,422,200	76,603	3,345,597	시설비 97% 감리비 100% 시설부대비 100%
평화도시 추진사업	50,000	50,000	-	50,000	100%
관상복합개발 추진	150,000	150,000	-	150,000	100%

[문제점]

- 시설비의 경우 주민마찰 및 현지여건 등에 따른 민원발생 등 다양한 사유로 이월 사유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비가 전체 예산액 대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는 사업 추진계획 및 재원의 집행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 및 조정 시 적극 반영하여 함에도
 - 고양 어울림누리 빙상장 리모델링 공사 (체육진흥과)의 경우 2018년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체육진흥과와 고양도시관리공사 간의 사업주체 결정에 따른 기간지연과 이용자 및 운영자 의견수렴 과정에서 빙상장 사전 대관 및 운영일정 등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2019년 3월부터 6개월간으로 결정되어 불용처리하고, 2019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재 반영한 사례임
 - 평화도시 추진사업 (마이스산업과)의 경우 2017년 본예산으로 정발산동 평화공원 조성의 초석으로 DJ추모비 및 안내판을 건립코자 하였으나 상충된 주민의견과 대립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2018년 명시이월 하였고, 이후에도 평화공원 조성에 대한 주민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아 불용 처리한 사례임
 - 관상복합개발 추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경우 시유지를 대상으로 재산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관공서 및 상가복합시설 건립을 위하여 2018년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동 부지가 중도에 테크노밸리 사업출자로 결정되면서 계획변경(사업보류)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불용 처리한 사례임

[개선 및 권고사항]

- 사업추진의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 주민의견, 사업의 여건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 당해 연도에 예산집행을 못하고 이월시에는 이미 노출된 현안사항 해결의 불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세부사항 검토 결과에 따라 이월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사업의 지연 또는 취소로 인한 이월예산의 불용으로 재원이 2년간 사장되는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하하는 일이 없도록 권고함

(8)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세금계산서 발행 시 홍보 필요

[현황]

- 3개 구청에서는 도로나 하천을 점용하는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점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고 있음

[문제점]

- 각 구청에서는 점용료를 부과할 때 공급받은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자의 건수와 금액이 상당함
- 도로점용료나 하천점용료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사업관련 매입세액인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개선 및 권고사항]

- 점용(굴착)허가서를 제출받을 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거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하도록 하여 일반과세자의 면세혜택을 받도록 홍보하기 바람

(9) 성인지 예산의 관리 철저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별	사업수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일반회계	128	268,195	254,143	94.76
기타특별회계	5	4,712	3,984	84.56
기금	1	92	77	83.81
합계	134	272,999	258,205	94.58

- 고양시 성인지 예산은 예산현액 2,626,578백만 원의 10.38%를 차지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은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여성 능력개발 기회제공,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여성·노인·장애인 및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를 강화하여 여성인력의 능력개발, 사회적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위한 지원확대, 가정양육수당,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의 여성에 대한 복지정책을 강화하여 성차별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문제점]

- 성인지 예·결산은 여성과 남성이 고루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매년 성인지 예산과 사업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 성인지 예산의 134개 세부사업의 실태를 보면 양성평등사업과 관련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이 다수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 이는 양성평등이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어 명목상의 성과에 집착하여 양성평등과 무관해 보이는 사업도 성인지 예산에 편입하여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개선 및 권고사항]

- 앞으로 단순한 실적이나 성과에 치우쳐 양성평등과 무관한 사업을 성인지 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성차별을 해소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개발하여 집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0) 성과보고서 작성 및 관리 철저

[현황]

(단위: 개,%)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A)	초과달성(B)	달성(C)	미달성	달성률(B+C/A)
17	101	183	17	121	45	75

[문제점]

- 성과보고서는 2016회계연도부터 결산서에 첨부되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와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토록 하는 제도임
- 또한 대상회계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성과관리대상은 성과계획서상의 모든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이에 따른 성과보고서 작성 기본방향은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서로 일치되도록 성과보고서(성과지표, 목표수정 불가)를 작성하여야 하고, 정책사업 별 추진실적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보고하여야 함

- 전략목표 및 정책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 설정이 목표와의 연관성이 미흡한 지표가 있으며, 지표달성 측정에 관련된 목표치 및 측정산식이 성과지표와 연관관계가 불분명한 지표가 있어 목표달성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있음

[개선 및 권고사항]

- 성과지표 설정 시 전략목표와 연관성을 고려하고, 그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사업을 지표로 설정하여 사업의 성과가 달성되면 동시에 전략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11) 기금 별 유희자금의 적정 운용 · 관리 필요

[현황]

【주요 기금 별 시 금고 보유자금 현황】

(단위: 백만원)

기금명	예금	2018년 말
식품진흥기금	정기	203
	공금	256
아동복지기금	정기	19
	공금	0.2
재난관리기금	정기	8,300
	공금	21,452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정기	0
	공금	3,146
옥외광고발전기금	정기	0
	공금	651
고양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정기	0
	공금	1,233
통합관리기금	정기	31,530
	공금	8,501

* 각 기금 보유 잔액 중 일반회계, 통합관리기금으로의 예탁금은 제외금액임

[문제점]

- 각 기금은 보유자금에 대하여 재원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일부자금은 일반회계 또는 통합관리기금으로의 예탁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잔여 자금에 대하여는 시 금고 기금계좌로 관리하되, 일부는 알짜배기기업예금, 정기예금으로 관리하여 이자 수입을 증대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자금운용을 해야 함

- 기금의 경우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예탁금 원금회수 또는 이자수입 등으로 세입예측이 비교적 용이하며, 이를 기반으로 집행시기 등을 판단 후 세수증대를 위하여 유휴자금을 집행시기별로 금리가 높은 알짜배기기업예금 또는 정기예금에 분산관리 하여야함. 대부분의 기금은 잘 운용되고 있으나 개선이 필요한 기금도 있음

[개선 및 권고사항]

- 시 금고에 유휴자금을 1개월 이상 보관 시에는 정기예금으로 보관 가능하며, 알짜배기 예금의 경우 7일 이상 활용 가능한 바, 각 기금관리 부서는 공공예금으로 관리되는 유휴자금의 세입추계 및 지출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단기적인 집행대상 자금을 제외한 유휴자금을 시기별, 금액별로 구분하여 알짜배기기업예금, 정기예금 등으로 관리토록 권고함

(12) 학교 체육관의 지역 생활체육시설 활용방안 모색

[현황]

(단위: 개)

구분	학교 수	체육관 보유 형태			
		합계	단독	본관연결	간이
초등학교	83	82	27	30	25
중학교	41	40	16	17	7
고등학교	36	34	12	18	4
기타	7	3	2	1	0
합계	167	159	57	66	36

- 학교에서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교부 받으려면 지자체 예산 지원이 30% 필요함

【연도 별 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학교 수	지원액	학교 수	지원액	학교 수	지원액
지원현황	4	3,844	4	2,382	9	4,078

[문제점]

- 현재 다양한 생활체육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공공 체육시설의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나 새로운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와 건립비용은 재정적인 부담이 되고있음
- 각 학교는 미세먼지와 폭염으로 외부 체육수업이 어려워 체육관을 건립하고 있고, 또한 시도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별도로 건립하고 있어 이중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 그러나, 접근성이 용이한 학교체육시설은 학생들만 이용하고 시민들의 이용이 제한적임

[개선 및 권고사항]

- 학교시설이 지역주민에게 생활체육·여가·문화 활동의 공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효율적인 체육시설 개방을 위해서는 학교와 시, 교육청과 MOU를 체결하는 등 학교(교육청)와 시의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임
- 학교와 동호회,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을 연결하여 문화적 복지 취약계층(육아여성, 어린이,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의 스포츠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13)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운영 철저

① 백석 Y-CITY 공공시설(용지) 협약

[현황]

- 2009. 7. 주민제안서 제출(요진개발→고양시)하여 공공기여 방안 제시
 - ↳ 업무빌딩 2만평 내외, 토지 36,247㎡(32.7%), 학교부지 포함
- 2010. 1. (최초) 협약서 체결(기부채납 토지비율 32.7%준공과 동시 시설물 일체를 기부채납)
- 2012. 4. 추가협약서 체결(고양시↔요진개발)
- 2013. 3. 확약서 체결(요진부지 개발 관련 권리·의무 : 3개사 공동부담)
- 2016. 9.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업무빌딩 240억 원, 학교용지 363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
- 2018.10. 기부채납 대상 업무용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소유자 : 고양시)
- 2018. ~ 2019. 요진 자산 가압류 설정(업무빌딩 기부채납 지연손해금 149억 원)
- 2019. 4. 기부채납 존부 다툼 관련 행정소송 대법원 승소

[문제점]

- 협약서 체결 당시 협약서 내용의 불명확함으로 인하여 다툼의 여지가 생겨 오랜 기간 동안 소송이 진행되어 행정력 낭비 및 불필요한 소송비용이 발생함
- 당초 공무원, 회계사, 변호사 등의 전문성을 갖춘 TF팀을 구성하여 협약내용의 효력 여부 검증 등 협약사항 미 이행 시의 대처방안 등을 철저하게 모색했어야 했음
- 또한, 사업승인 후 Y-CITY 착공과 더불어 업무빌딩도 병행하여 착공이 이루어졌다면 추후 발생한 임차료 및 부대비용이 절감되었을 것임
- 기부채납 존부다툼 관련 행정소송을 최종 승소하였고 민사소송(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도 승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에 따른 채권회수의 가능성이 불명확함

[개선 및 권고사항]

-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법원 확정판결 후 예·적금 및 기타 자산에 대한 가압류와 가압류 자산의 공매·경매 등을 추진할 TF팀을 별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향후 협약 확행을 위하여 인·허가 전에 기 체결한 협약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후 인·허가 처리가 필요함

【요진건설산업(주) 소유의 압류가능한 재산목록】

(단위:백만원)

자산구분	세부구분	재무상태표의 계정과목	금액
부동산	주택	완성주택	3,734
	토지	용지(用地)	27,910
	토지	토지	8,471
	건물	건물	11,952
채권(債權)	예금채권	현금 및 현금 등가물	69,005
	예금채권	단기금융상품	4,486
	공사대금채권	매출채권	20,414
		공사미수금	35,048
		분양미수금	5,368
	보증금반환채권	보증금	3,323
총계			189,711

* 2018.12.31 요진건설산업(주)의 감사보고서기준, 감가상각누계액과 대손충당금 차감 전.

② 피프틴 사업

[현황]

- 운영기간 : 2010. 6. ~ 2020. 5.(10년 간)
- 운영방식 : BOT방식(공공 부문의 사업을 민자화하는 과정에서 참여업체가 소요자금을 투자, 구조물이나 건물을 완성하여 발주처에 기부 채납하는 방식)
- 사업내용 : 피프틴 스테이션 150개소, 관제센터 1개소, 차량8대, 자전거 3,000대
- 인력운영(43명) - 정규직 10명, 계약직 10명(4~11월 임시직), 용역직 23명

【재정지원금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금 액	2,373	2,372	2,372	2,315	2,765	5,355	2,700	2,700

- 2018년 예산집행 : 대출원금 1,383백만원 / 운영비 989백만원

[문제점]

- 피프틴 사업은 2010. 6. ~ 2020. 5.까지(10년 간) BOT방식으로 운영 중인 사업으로 이용률이 저조(2018년 1대당 이용률 0.85회/1일)하며
- 운영사 에코바이크(주)의 운영적자로 인한 고양시 재정지원금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 왔으며, 협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보유대수 대비 실제 운영대수의 비율이 60%로서 활용률이 너무 낮음

[개선 및 권고사항]

- 피프틴사업은 현 체계로는 적자방식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재정의 효율성 유지가 어려울 것이므로 2020년 협약 만료 후, 사업의 청산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의 운용성과(시민만족도 등)와 설립타당성을 재분석하여 사업을 지속할 경우, 고양시가 직영하거나 재 협약 시에는 신규시설 확대(자전거도로 및 피프틴 스테이션 등) 설치 및 기존 시설물의 유지는 고양시가, 전반적인 운영은 협약업체 책임 하에 하는 조건으로 협약체결 방식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타 지자체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규모를 결정하되, 최소한 대 당 1일 이용률이 5회 이상이 되도록 인원과 자전거 대수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③ 킨텍스 전시장 운영

[현황]

- 운영규모

구분	1단계 전시장	2단계 전시장
부지면적 (시유지)	전시장부지 223,344.6㎡ (공시지가 5,672억 원)	전시장부지 200,566㎡ (공시지가 4,584억 원)
건축물면적 (기부채납)	연면적 : 117,135㎡ (건축비 2,315억 원)	연면적 218,048㎡ (건축비 3,591억 원)
개장일자	2005. 4.	2011. 9.

- 공유재산 관리 현황
 - 제1전시장(건물 및 토지)
 - * 2005. 4. ~ 2018. 7. : 건물 기부채납에 따른 (주)킨텍스 무상사용
 - * 2018. 8. ~ 2022. 12. : 관리위탁(고양시→(주)킨텍스) ※ 위탁료 1,736백만원/연
 - 제2전시장(건물 및 토지)
 - * 2011. 9. ~ 2031. 9. : 건물 기부채납에 따른 (주)킨텍스 무상사용
 - ※ 킨텍스 제1·2전시장 기부채납: 2013. 5월 / (주)킨텍스 → 고양시

[문제점]

- 법령을 위반한 기부채납 시기 연장
- 건물·시설·장비 노후화에 따른 재정부담 심각
 - 2018~2033년 대수선비 1,360억원 예상(약 70억원/연)
- 공유재산 사용요율 하향 조정으로 사용료 수입 감소
 - 사용료 5% → 1%로 조정(2008년)
- 제1전시장 사용료 대비 위탁료 하향 책정
 - 위탁료 : 17.3억 원/연, 사용료 : 약 80억 원~400억 원/연(요율 1%~5% 적용 시)

[개선 및 권고사항]

- 대수선비 내역 철저한 검토 및 시에서 직접 집행 검토
-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개선을 수탁기관의 부담으로 하는 것을 검토
 - ※ 행안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가능
- 제1전시장 관리위탁료 상향을 위한 노력 필요
 - 위탁료 산정기준 적정여부 재검토, 위탁관리와 사용수익허가 병행 등 다각적인 방안으로 재정건전성 강화방안 모색 필요
 - 수탁자의 무상사용 기간에 상응하는 의무부여 방안 검토

(14) 실익 없는 소송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고양 바이오매스)

[현황]

- 2007.12. 삼송지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고양바이오매스)부지 무상공급 요청(고양시→토지공사)
- 2011.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납부금액 등 통보 취소 청구 소송
- 2012. 5. 2심 패소 고양시 항소 기각
- 2016. 4. 대법원 파기환송
- 2017. 2.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무상제공의 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
- 2018. 5. 1심 판결(그간 부지사용료 & 이자 + 향후 사용료 지급명령)
 - ↳ 그간 부지 사용료 및 이자 5,482백만 원 납부

[문제점]

- 과거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부과취소 소송 전말을 살펴보면, 승소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것으로 소송을 계속 진행하였던 것이 과연 고양시의 이익에 부합하였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음
- 당시 소송의 손익을 계산해보면 시가 받는 부담금보다 부지취득으로 인한 이익이 더 높았을 것이며, 어렵게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패소로 인한 비용발생이 더 많은 결과를 초래하는 등 실익 없는 소송으로 인해 행정 낭비와 재정상 손해가 발생하였음

[개선 및 권고사항]

- 소송사건의 경우, 시간이 경과할수록 문제해결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정책결정 및 집행 시 고문변호사와 법률자문관, 관련 부서와의 충분한 검토, 협의, 소통이 필요함
- 고양시의 이익을 대변할 방법과 발전방안에 대해 정책결정권자는 합당한 재무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임
- 주요정책 결정 시 명분뿐만 아니라 실리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러한 실익이 없는 소송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임

(15) 세외수입 수납금 운용방안 개선(원어민 영어교실)

[현황]

- 추진 현황
 - 운영기간 : 4. ~ 12.(9개월)
 - 대 상 : 저소득층을 포함한 고양시민 3,000여명(초등학생 및 성인)
 - 사 업 량 : 35개 동 행정복지센터 36개소
 - 예 산 액 : 800,000천 원
 - 이용금액 : 월 20,000원
- 수강료 징수 및 사용
 -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인당 월 2만원씩 수강료를 징수하고, 수강료 수입을 세외수입처리 하지 않고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원어민 영어교실 사업을 포함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전액 사용해왔음
 - 2019년도 : 수강료 수입 중 50% 선 공제 후 세입조치
 - 2020년도 : 수강료 수입 전액 세외수입 조치 후 위탁수수료 40% 지급
 - ※ 위탁수수료 비율 50%(2019년) ⇒ 40%(2020년) ⇒ 30%(2021년) 매년 10% 축소하여 2021년부터 30% 유지

[문제점]

- 지방회계법 제25조에 의하면 모든 수입은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법률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액을 직접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수강료 수입 전액을 세입조치를 하고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함

- 다만,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의 줄어든 만큼의 수입보전이 필요하나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부족함

[개선 및 권고사항]

-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의 수입 손실분에 대하여 주민자치 공모사업 및 주민참여 예산 등을 통해 환원함이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16) 청사 노후화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

[현황]

- 고양시청 임차사무실 현황
 - 임차사무실(9개 건물 15개과 7개실)
 - 전체 보증금 527,400,000원, 임차료 43,825,580원(월)/ 525,906,960원(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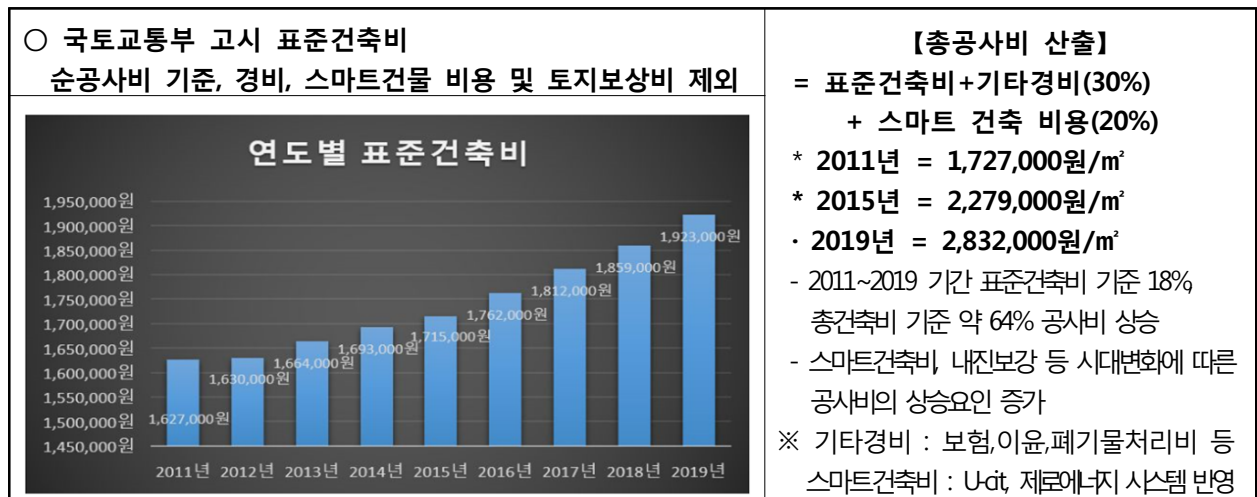
【고양시청 연간 유지관리 비용(임차사무실 제외)】

(단위:천원)

연도	합계	2019년	2018년	2017년
금 액	7,121,800	2,690,104	2,386,665	2,045,031

- 고양시의회(신관) 환경개선 공사비(2018년) : 900,000천원
 - 구조보강 및 미비 설비 보완·보수, 사무 공간 개선 등

【연도별 시청 공사비 현황】



[문제점]

- 과거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 청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했다면 현재 불필요한 임차료와 환경개선을 위한 청사 유지관리비용 절감 및 부동산가 상승에 따른 투자 가치가 있었을 것임

- 또한, 1㎡ 당 건축비가 매년 상승(2011년 1,727천 원, 2015년 2,279천 원, 2019년 2,832천 원)하여 조기에 신청사 신축을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 재정 부담이 되었음
- 이는 증가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임시방편적인 임차 및 청사 유지보수에 국한한데서 기인함

[개선 및 권고사항]

- 104만 고양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신청사를 건립하기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함
- 신청사는 단순한 사무 공간 확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시민의 편익을 위한 공공시설 등 시민들과 함께 어울어질 수 있는 세계적 명소로서 미래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함

(17)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절차 미 이행

[현황]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대상
 - 금액기준(1건당) : 취득 10억 원 이상 / 처분 10억 원 이상
 - 면적기준(1건당) : 취득 1천㎡ 이상 / 처분 2천㎡ 이상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 제외대상
 -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문제점]

- 킨텍스 부지 관리계획 미승인

구분	소재지	승인여부
1단계	대화동2307-12(S1) (대방건설)	- 관리계획 가결(2006년) - 관리계획(변경) 미상정(용도 변경)
	대화동2601(S3) (현대모토스튜디오)	- 관리계획 가결(2006년) - 관리계획(변경) 미상정 (면적 30%이상 증가, 용도 변경)
	대화동 2603, 2603-2(C2) (한화꿈의그린)	- 관리계획 가결(2006년) - 관리계획(변경) 미상정(용도 변경)
2단계	대화동2701(C1-1) (현대힐스테이트)	- 관리계획 미 상정
	대화동2702(C1-2) (포스코더샵)	

※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대상인 용도의 변경이 아닌 지구단위계획상 허용용도 추가로 변경대상이 아니라는 의견 존재로 별도 법적 해석 필요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보다 특별법 지위에 있는 도시개발법에 의거 관리계획 승인대상 배제 검토 필요

○ 기타 취득 재산 관리계획 미승인

(단위:백만원)

연도	소재지	용도	취득가액
2010	지영동 865 외	지영동 체육시설	1,038
2011	원흥동 471-10	친환경농업 연구시설	1,603
2013	장항동 906	일산노인종합복지관(호수레스토랑)	1,771

[개선 및 권고사항]

-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회 대상 및 절차 등에 대한 지침 안내(수시)
- 공유재산 심의회 및 관리계획 일정 정례화(의회 일정과 연계)
- 예산편성 시 관리계획 의결 여부 확인 확행

(18) 반복적 결산검사 권고사항 미 조치

[현황]

- 1년 동안 예산의 편성과 세입·세출 내역을 확인하고 다음연도 예산운용에 환류하는 제도가 ‘결산’이므로 사후 검증인 결산의 권고사항은 다음해에는 반복되지 않아야 함
- 그러나, 세입금 과오납 최소화(지난년도 수입),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운용 관리, 불용액 과다 등은 최근 3년 간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음

[문제점]

- 예산 성립과는 달리 결산은 문제가 지적된다 해도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는 인식으로 담당자들의 전반적인 관심이 부족함
- 특히, 매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된다는 것은 동일한 예산 운영 사례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개선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짐

[개선 및 권고사항]

- 결산검사 시 지적된 문제점들은 그 경중에 불구하고 반드시 차기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야 하고 또 잘못된 점은 집행과정에 동일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여 소중한 예산의 낭비를 막고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2회 이상 반복 지적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불이익을 적용하는 등 결산검사 결과를 환류하여 각 부서들의 관심도를 높이도록 해야 함

V.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

1. 세입금 과오납 최소화

- 2017년 환급액 중 불복청구를 통한 납세자 권리구제에 따른 환급액 2,434백만 원과 행정기관 착오로 발생한 환급액 221백만 원은 부실과세에 따라 발생한 환급액으로 판단되는 바,
- 이는 부실과세로 인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환급에 따른 환급가산금의 부담으로 재정손실이 발생하므로, 착오부과에 의한 반환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과업무 담당자의 정확한 업무 숙지 및 부과대상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
- 조치결과 : 부과 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법령 해석 시달 및 기존 사례 연찬 등을 통해 부과 담당자의 자질을 높이는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부과 후 민원이 접수되면 적극 지도하여 착오부과분에 대해서는 구제신청 전에 인용하도록 하여 납부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음
착오부과에 의한 반환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세자료 주제도시스템(항공지적도와 불일치 과세자료 추출)을 활용하여 부과 전 과세자료를 현지출장 확인 후 과세대장을 일제정비하고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및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과세 누락 및 부과 오류 부분에 대하여 과세 및 감면 대상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세입업무 담당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업무연찬을 강화하기 위한 세입업무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음

2. 세외수입 징수 대책 마련

- 일반회계의 세외수입 중 지난연도 수입을 부과 및 징수함에 있어 64,122백만 원이 미수납으로 이월되었음. 세외수입의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납세태만으로 인한 이월액이 563억 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87.9%에 이르고 있어 지방세의 15.1%와 비교하면 매우 높으므로, 적극적인 징수대책 수립이 요구됨
- 조치결과 : 체납자의 재산을 수시 조회하여 신속한 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고, 자동차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변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명단공개 등의 간접강제 제도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3. 부서별 불용액 개선방안 모색

- 사업부서의 예산수요에 대한 분석 및 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요구액에 대한 산출근거의 정확성과 필요성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하여 2017년의 불용액은 2016년 대비 금액이 감소하였으나 불용액의 관리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조치결과 : 집행잔액 및 미집행사업 등에 대하여 사전 조사를 거쳐 추경에 감액하여 해당재원을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추경편성 방향을 재설정 하였음(2018년 2회 추경 시 감액재원 166억 원 활용)

4. 순세계 잉여금의 과다발생

- 최근 3년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의 세입결산액 대비비율이 12%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과거 5년간 시계열상 금액 및 비율이 증가추세에 있음. 순세계잉여금은 매 회계연도에 세출의 절감, 세수의 증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중 불용액 발생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당해연도 재원이 사장되어 원활한 재정사업의 진행에 차질을 줄 수 있으므로 좀 더 적극적인 세출예산 반영을 통하여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함
- 조치결과 : 추경 시 집행잔액 및 미집행사업 등에 대하여 사전 조사를 거쳐 감액 하도록 하였으며, 본예산 편성 시에도 전년도 집행액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함. 향후 불가항력 사유가 없는 불용액 과다 사업의 경우 패널티 확대를 검토하겠음

5. 예비비 충당예산 집행잔액 최소화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써,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회계연도에 재량으로 사용하고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시 예비비로 환원하여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효율적 예산활용을 위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야하나, 몇몇 부서에서는 예산액을 전액 사용치 아니하고 불용 처리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예비비 지출 시 계획단계부터 지출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예비비가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 조치결과 : 예비비 집행 승인 시 정확한 산출금액 및 지출계획을 확인하였으며, 승인 이후 집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예비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6. 계속비의 합리적 예산편성 운용

- 계속비 중 전년도 사업비가 이월된 상태에서 2017회계연도에 추가적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2017년 지출내역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에도 못 미치는 지출실적을 보이는 바, 결과적으로 추가 편성된 예산은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음
- 계속비 사업과 같이 장기간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현황 및 예산 투입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 편성 시 반영함으로써, 예산재원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조치결과 : 본예산 편성 시 계속비 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사업 예산은 연내 집행 가능 금액에 한하여 요구토록 하였으며, 향후에도 전년도 이월액 및 집행액 등을 확인하여 이월금액을 최소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7.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용자금 관리

- 지방세 징수법에 의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체납처분의 실효성이 없을 경우,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장·단기 대여금(용자금)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임. 보증인의 보증과 압류가 되어있는 상황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을 것이므로 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을 보아 체납처분의 실효성이 없다면 결손 처분하는 것이 합리적임. 이렇게 함으로써 신용회복을 통한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조치결과 : 장기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고양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용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결손처분)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22조(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에 따른 결손처분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결손처분이 불가하였음. 추후 결손처분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VI. 수범사례

고양시의 각 부서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관련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는 다음과 같음

1. 서울시 기피시설 인근 도로사업을 위한 지원금 확보로 수입중대(시민소통담당관)

- 수십 년 전부터 고양시 소재 서울시 기피시설(서울시립승화원, 난지물재생센터, 서울시립묘지 등)로 인해 교통체증, 통행성 확보, 환경오염 등의 막대한 주민피해가 발생하여 주민숙원사업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여건상 수년간 사업비 미 반영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서울시립묘지 교통 이용률, 난지물재생센터로 인한 주민 통행성 불편 등 타당성을 서울시에 제시하고 협상하여 서울시 지원금 48억 원을 확보 (대로 3-33호선 확포장 공사 23억 원, 난점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 25억 원)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사례임

2. 예산안 첨부서류 제출방법 개선(예산법무과)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 시 예산안과 첨부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음. 예산안 첨부서류 중 세부사업설명서는 5개 상임위원회별로 제작하고 약 4천 쪽으로 물량이 방대하여 책자 제작 시 많은 예산 및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코자 시의회와 협의결과 시의회 의장으로 부터 2019년도 예산안 제출 시부터 전산파일로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 결정을 받아, 책자제작비 3천3백만 원 절감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가져 왔으며, 특히 매년 되풀이 되는 예산절감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둔 사례임

3. 일산서구청 임시청사 원상복구사업 예산절감(회계과)

- 일산서구청 신청사 건립완료로 기존에 사용하던 임시청사의 계약기간만료일 (2019. 03. 14) 이전에 이사 및 원상복구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일산서구청에서 2019년 3월 중 이사를 전제로 2019년 본예산에 공사비용을 반영함에 따라 공사소요 기간(5월 중순)등 사유로 적기 집행이 불가하여 계약만료일까지 이사가 불가한 실정으로 복구 공사비(용역결과 5억5천만 원 소요) 및 지연에 따른 계약불이행 손해배상 추가비용 (1억9천만 원)등 7억4천만 원의 비용이 과다 발생됨
- 이에 회계과에서는 건물주와 5차례에 걸쳐 협상하였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던 차에 자문변호사(5개소)의 법률자문을 받아 임차보증금(62억 원)에서 원상복구비용 3억5천만 원을 상계처리하고 2019년 2월 28일까지 이사하기로 최종 합의하여, 일산서구청 이전을 완료하고, 당초 예상되던 원상복구비용 및 손해배상금 3억 9천만 원을 절감한 사례임

4. 2018년 스마트오피스 구축사업 추진(정보통신과)

- 2018년 스마트오피스 구축사업은 “인터넷전화시스템 전면교체”, “모바일전화서비스 구축”, “전자팩스서비스 구축”, “사무실 와이파이 구축”, “공공 와이파이 구축” 총 5개 분야의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총사업비 2,717백만 원 중 80%에 이르는 2,183백만 원이 소요되는 “인터넷전화시스템 전면교체를 C그룹 사업자(국가지정 기간통신사업자 :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제안 경쟁 및 협상을 추진해 별도 예산편성 없이 노후·단종된 시스템을 전면 교체함으로써 21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면서 유·무선 융·복합서비스 환경을 구축한 사례임

5. 차량방법 CCTV 활용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환경보호과)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당초 상급기관(환경부·경기도)사업방침은 노후경유차 단속만을 위한 별도의 카메라를 설치토록 하였으나, 기존에 타 용도로 기 설치된 카메라 활용방안을 시민안전과 및 사업수행사와 수차례 협의결과 차량방법 CCTV를 호환하여 시스템구축이 가능하여 상급기관에 아이디어를 제안, 가능하다는 결과에 따라 전국최초로 차량방법 CCTV를 활용한 단속시스템을 구축함. 이에 따라 신규카메라 설치비용 약 3억2천만 원을 절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 구축된 CCTV와 통합관리로 향후 유지관리비용을 대폭 절감시키는 우수사례로 벤치마킹이 되고 있음

6. 토지보상비 절감을 통한 상습 교통체증 개선사업 추진(도로정책과)

- 2017년 원당삼거리 상습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비 6억 원, 시설비 1억 원을 투입하여 좌회전 차로 60m를 개설하는 사업내용이었음
-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면서 5개월 간의 사업지 일원 토지조사를 통하여 1978년 최초 도로개설시 시 보상내역을 찾게 되어, 이를 토대로 수차에 걸친 토지소유자 설득 및 법률자문을 통하여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및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4필지 5,612㎡(현시가 기준 약 40억 원)를 고양시 소유로 등기 이전하였고, 절감된 토지보상비 6억 원을 활용하여 설계 변경하여 좌회전차로 300m 개설과 버스베이 2개소를 설치하는 개선사업을 진행 중인 우수사례임

